<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>

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신설 2026. 8. 20.>

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
신청기관	기관·단체명	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
	주된 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담당자	소속	직위
	성명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. 운영계획서 3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토	→	지정 여부 결정	→	신청인에게 통지
신청인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		

< 첨부서류 1 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제1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>

< 첨부서류 2 : 연구보안 전담기관 운영계획서 >

연구보안 전담기관
운영계획서

2026.

○○

〈 국 문 요 약 문 〉

개요	
업무 추진 계획 및 관련 성과	

※ 1~2 페이지 이내로 작성

1. 전담기관 개요

(1) 기관의 운영 개요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기관의 대표자(첨부서식), 조직구성, 참여인력, 시설.장비 현황, 등 전담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현황을 요약 제시
* 함초롬바탕 12pt

(2) 업무수행 시 강점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사업실적, 주요성과 등 해당 기관의 전문성, 수행 의지, 대외협력 등 강점을 서술
* 함초롬바탕 12pt

2. 업무 추진 계획 및 관련 성과

(1) 전담기관 운영의 추진방향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전담기관의 기능 및 역할, 목표, 운영내용, 중점 추진사항, 추진전략 등을 자유롭게 기술함
* 함초롬바탕 12pt

(2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규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행 계획을 각각 작성 ((2)~(6) 동일)
* 수행 계획 제시가 곤란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작성
* 수행 계획 및 수행 능력을 뒷받침할 관련 기존 실적 및 성과 작성
* 함초롬바탕 12pt

(3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、홍보、교육、실태조사

(4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

(5)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

(6) 그 밖에 연구보안 관련 업무

<총괄책임자 이력사항>

(1) 인적 사항

성명	국문		생년월일	
	영문		성별	
직장	기관명		전화번호	
	부서		휴대전화	
	직위		E-mail	
	주소			
실무담당자	성명		전화번호	
	E-mail			

※ 실무담당자는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한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

(2) 학력 사항

연도		학력		
부터	까지	대학교	전공명	학위
YYYY.MM	*YYYY.MM*			
YYYY.MM	*YYYY.MM*			
YYYY.MM	*YYYY.MM*			

※ 학위(택1) : 전문학사과정, 전문학사, 학사과정, 학사, 석사과정, 석사, 박사과정, 박사, 박사후연수, 기타

(3) 경력 사항

연도		기관명	직위	비고
부터	까지			
YYYY.MM	*YYYY.MM*			
YYYY.MM	*YYYY.MM*			
YYYY.MM	*YYYY.MM*			
YYYY.MM	*YYYY.MM*			

(4) 연구보안 관련 주요 연구실적

연도	실적 (논문, 연구개발과제 실적 등)	내용 (학술지명, 특허출원, 연구비, 연구기간 등)
YYYY.MM		

< 첨부서류 3 : 연구보안 전담기관 인력 및 사무공간 등 현황 및 증명서류 등>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제21조의2) 및 동법 시행령(제48조의2)에 규정된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및 전용 사무공간 현황을 작성
(기관 전체 조직이 아닌, 법령 상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작성)
* 증명서류는 (인력 증명 예시) 조직도, 재직증명서 등, (사무공간 증명 예시) 임대차계약서, 공간 사용확인서, 사무공간 사진 등 제출
* 함초롬바탕 12pt

□ 인력 및 사무공간 보유 현황

인력 보유 현황					
순번	성명	직위	전공	관련분야 종사 경력	담당 업무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※ 증명서류 :

사무공간 보유 현황				
순번	시설명	면적	주소	용도
1				
2				
3				

※ 증명서류 :

□ 재정적 능력 관련 증명서류

<작성 내용(제출 시 삭제)>
* 증명서류 : (예시) 재무제표, 예·결산서, 자금조달계획서, 재원 확보 증빙자료 등
* 함초롬바탕 12pt

< 첨부서류 4 : 확약서 >

확 약 서

1.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업무계획서 및 업무 내용 등에 동의하고, 본 기관이 심의를 거쳐 연구보안 전담기관로 선정될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,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보안 업무를 전담 및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. 또한, 제출한 운영계획서 및 기관 지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기재사항 오류·누락, 자격 제한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.

년 월 일

(기관명) (대표)

직 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